

#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 10. 28.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07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16년 10월 28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2014.5.28.)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의결 사항 :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가부 결정(의결)
- 출연 필요성 : 마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 마포아트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마포지역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함
- 2017년도 출연금(예정액) : 4,800,000천원
  - 산출기초 : 2017년도 총사업비 예산 9,500,000천원 × 51%

○ 마포문화재단 총 사업비(예산), 출연금 및 비율(출연금/총 사업비-단위 : 천원)

2017년도 총사업비 예산	출연금	
	금액	비율(%)
9,500,000	4,800,000	51%

○ 마포문화재단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890,496	1,460,674	2,037,972	2,210,777	3,219,882

### 3. 검토보고 (김은모 전문위원)

○ 본 계획안은 그 동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을 예산심의와 함께 일괄 처리해 오고 있었으나, 2014.5.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 출연금 주요내용으로는

1) 대 상 :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

2) 출연근거

①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3) 출연기관 : (재)마포문화재단

- 4) 우리 구 출연일자 : 2011. 2. 28. 창립 회원(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입)
- 5) 출연이유 : 「서울특별시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포구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마포구민의 문화 복지진흥 증대를 목적으로 출연금을 출연함

- (재)마포문화재단은 2007. 9.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마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 건물은 문화센터 및 체육센터 2개 동(棟)에 연면적 19,755㎡, 프로그램은 문화센터 동(棟)에서 어린이 유아체능단 운영 등 135여개의 다양한 문화강좌와 체육센터 동(棟)에서 헬스장 운영 등 160여개의 스포츠 강좌를 운영하면서 7개 팀에 직원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마포구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음
- 현재 마포문화재단에서는 출연금으로 마포구민에게 많은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포문화재단 비전 2020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마포구 지역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그 간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 1)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 제도 정비와 직원 성과평가제 도입 등 창의적 경영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 2) 고객중심의 고객모니터단 운영과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편익시설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고객서비스 향상을 하였으며,
- 3) 문화동 2,3층을 증축하여 살롱콘서트, 마포미협 전시, 예술단체 연습공간 등 다양한 공간운영으로 신규수익을 창출하고 일본 가츠시카구 국제 문화예술교류 행사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 및 인사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 마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향상시켰으며
- 4) 수준높은 마포 공연예술 향상을 위해 클래식, 연극, 댄스 시리즈 등 다양한

레퍼토리 구축을 통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공연전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확대하고,

- 5) 꿈의극단(30개), 꿈의합창단(19개) 등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아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술축제인<꿈의 무대>를 개최하여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 6) 그 밖에 사회공헌 예술 프로그램인 MAC 객석 나눔 “뷰티 프로젝트”와 마포문화총전 “천원의 문화공감”, 주부대상 “살롱드마포”, 청소년 대상 해설음악회 “청소년 썸머페스티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 7) 수영장 등 총 160여개 강좌도 위탁수업 및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시킴은 물론 어린이 대상 “마포아트센터 토요일문화학교” 운영 등 총 135여개의 문화예술 강좌를 포함하는 문화예술아카데미를 잘 운영하고 주민들로부터도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 구성내용이 좋고 마포문화재단이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 1. 문화 분야 활성화를 위해

- 1)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마포문화재단 "VISION 2020" 수정보완하여 재단 조직 및 사업체계를 점검하고, 기념축하공연, 커뮤니티 거리축제, 학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마포 문화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 2) 꿈의극단, 꿈의합창단에 이어 꿈의무용을 추가하여 마포 주민 커뮤니티아트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천원의 문화공감, 뷰티 프로젝트, 아트 인 스토 페이스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주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 2. 생활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해

- 1) 스포츠 맥 수영 등 160여개의 강좌와 더불어 주민욕구를 반영한 신규 강좌를 개설하고, 강사평가제, 강사 교육 등 강사 책임제를 강화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 2) 지역스포츠와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비수기 시간대를 활용한 단체 위탁 연계 수업을 확장 하는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내실있는 마포 문화재단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

### **3. 마포문화재단 주요 추진사업 계획(2017년도) : 별첨 1**

- 검토의견으로 동(同)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마포문화재단 출연금 의 예산편성 전 구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재단은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 계획을 가지고 그 간 운영해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고 수익창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부족한 문화공간 마련 을 위해 문화동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다양한 문화 및 체육공간을 하였고, 노후화된 문화 공연 장비 교체와 시설물 등을 개·보수 하는 등 최상의 문화·체육시 설 프로그램 및 시설물 관리로 주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음
- 또한 지역문화 활동분야에서도 “꿈의 합창단”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찾아 가는 음악회” 등 사회공헌 예술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밖에 마포아트센터 각종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위탁수업 방식도 개발하여 활성화 시키는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마포 구 주민의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재)마포문화재단에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출연금을 출연하여 관리·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